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 10. 20 선고 2020가합101675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부산고등법원 2023. 4. 13 선고 2021나58571 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 10. 20 선고 2020가합101675 판결

전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용건, 송민승

피 고 1.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국제, 담당변호사 조현재

2. C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교훈

변 론 종 결 2021. 9. 15.

판 결 선 고 2021. 10. 20.

주문

1. 가. 피고 B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세일링요트에 관하여 2018. 9. 20.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세일링요트에 관한 2018. 9. 20.자
저당권설정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라.

2. 가. 피고 C과 주식회사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세일링요트에 관하여 2018. 10. 18. 체결된
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C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세일링요트에 관한 2018. 10. 18.자 저당권설정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의 주식회사 D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2018. 1. 17.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에 7억 원을 대여하면서, ① D가 3억 5,000만
원은 2018. 8. 31.에, 나머지 3억 5,000만 원은 2019. 2. 28.에 각 상환하되 만약 위 상환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할 때에는 채무금을 즉시 변제하며, ②
원금에 대한 이자는 없지만 위 지정일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 연체이자는 연 15%의 비율로
지급하기로 정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2) D의 이사 E은 2018. 1. 17. D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3) 원고는 2019. 1.
10. D와 E을 상대로 '대여금 7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은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2019. 10. 12. 원고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가합100432호, 이하 원고의 D와 E에 대한 채권을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라 한다).

나. D의 저당권 설정

1) D는 2018. 9. 20.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세일링요트(이하 ‘이 사건 요트’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6억 원으로 정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회사 앞으로 저당권등록을 마쳐주었다(이하 위 계약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

2) D는 2018. 10. 18. 피고 C와 사이에 이 사건 요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8억 원으로 정하여 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C 앞으로 저당권등록을 마쳐주었다(이하 위 계약을 ‘이 사건 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하고, 위 1)항, 2)항의 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호증, 을가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이 사건 각 계약 전에 발생한 것으로서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게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 위와 같이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된 재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라거나 그 가치가 채권액에 미달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다18218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 이 법원의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사업소 및 해운대구청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해운대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 제출명령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D는 이

사건 각 계약 체결 무렵 부산광역시에 조세 44,185,860원(2017. 12. 19. ~ 2018. 3. 6. 총 23회)을 체납하고 있었던 사실, 이 사건 요트에 관하여 2017. 8. 31. 채권자 (주)F, 설정금액 2억 원인 저당권이, 2017. 9. 8. 채권자 G, 설정금액 2억 1,000만 원인 저당권이 각 등록된 사실, 이 사건 각 계약 체결일에 가까운 D의 2018. 12. 31.자 표준대차대조표의 자산총계는 3,252,934,748원, 부채총계는 4,152,706,446원, 자본총계는 -899,771,698원으로 자본금 전액이 잠식된 상태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D는 이 사건 각 계약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그렇다면, D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요트에 관하여 피고들과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기초하여 저당권등록을 마쳐준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을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D는 그로 인하여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겨 자신의 채권자들을 해할 것임을 알았다고 볼 것이며, 이러한 경우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도 추정된다.

4)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D가 이 사건 요트를 담보로 제공한 것은 그 사업을 계속하여 채무 변제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채무자가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부득이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그로부터 신규자금을 추가로 융통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담보권설정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0015 판결 등 참조). 을가 제1 내지 4호증, 을나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는 2018. 9. 20. D와 이 사건 요트 및 시설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D에 보증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입금한 사실, 피고 회사는 같은 날 D에 2억 3,000만 원을 이자 연 5%, 변제일 2019. 10. 31.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피고 C은 E에게 2014. 3. 14. 8억 원을, 2014. 6. 23. 10억 원을 각 입금한 사실, 피고 C은 2018. 1.경부터 2018. 5.경까지 D에 합계 396,833,596원을 입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 즉 ① D가 피고들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자신의 사업 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② 오히려 D가 피고들로부터 지급받은 돈의 상당 부분은 기존 채무의 변제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

C은 D에 대한 기존 채무의 담보를 목적으로 이 사건 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위 계약으로 인해 D가 피고 C로부터 신규자금을 추가로 융통받은 것도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D가 사업 계속을 위한 부득이한 행위로서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들의 선의 여부

- 1) 피고들은 이 사건 각 계약 체결 당시 D가 원고 등 제3자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지 전혀 몰랐고, 위 각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다른 채권자들을 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 2)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참조). 또한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 의하여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다51908 판결, 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
- 3) 앞서 든 증거들, 위 인정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실과 사정, 즉 이 사건 각 계약이 체결되기 전인 2018. 1. 25. 이 사건 요트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이 법원 H), 2018. 2. 1. 이 사건 요트의 등록원부에 공매공고가 등록된 점, 이 사건 요트에 관하여 2018. 8. 30. 세금 체납으로 압류가 설정된 점, 피고 회사는 D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당시, 특약사항으로 “2018. 9. 20. 선박원부상 설정되어 있는 G(임의경매 실행자)의 근저당권은 2018. 9. 21.까지 해제할 것이며,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 본 근저당권을 근거로 권리행사를 하는 것에 이의가 없기로 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였고, 실제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된 다음 날인 2018. 9. 21. 이 사건 요트에 관한 G의 저당권등록이 말소되고, 임의경매취하결정이 내려진 점에 비추어 피고 회사는 위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이 사건 요트에 대하여 임의경매절차개시결정이 내려졌고, 이로 인해 위 요트의 정상적인 이용이 어렵다는 사정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고 C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 C은 2014.경부터 2018. 5.경까지 이 사건 요트 구입 비용, 선박 공매취하 비용 등의 명목으로 D 내지 D의 이사인 E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려주었다는 것인바, 피고 C은 이 사건 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D의 재정적 상황에 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의 악의의 추정을 뒤집고 피고들이 선의의 수익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들의 위 항변 역시 이유 없다.

라. 소결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요트에 관한 각 저당권설정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노행남, 판사 이윤규, 판사 이나리

별지

세일링요트(동력수상레저기구)의 표시

1. 기구의 종류 : 세일링요트
1. 기구의 명칭 : I
1. 등록번호 : J
1. 등록번호판 : (차량번호 1 생략)
1. 추진기관의 종류 / 형식 / 수 : 선내기, 선내기/ 4cycle 외 1개 / 2
1. 최대출력 : 948마력
1. 승선 정원 : 70명
1. 총 본수 : 17톤
1. 계류지 : 부산시 해운대구
1. 소유자 : ㈜ D. 끝.

